투자일임계약서





______(이하 "고객" 이라 한다)과 씨스퀘어자산운용㈜ (이하 "회사"라 한다)는 고객의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 투자자금(이하 "투자일임재산" 이라 한다)의 운용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,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투자일임대상)

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대상으로 한다.

- 1.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(이하 "자본시장법" 이라 한다) 제4조에 규정된 증권
- 2. 자본시장법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
- 3.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

제 3 조 (투자일임의 범위)

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.

- 1.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
- 2.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
- 3.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
- 4. 투자대상의 종류, 종목, 수량, 가격에 대한 사항
- 5.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,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
- 6.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

제 4 조 (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)

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
- 2.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
- 3.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
- 4. 그 밖에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 5 조 (회사의 신의성실의무)

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한다.

제 6 조 (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)

-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자산의 내용과 규모, 고객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임한다.
-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고객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경력



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(전자)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 투자운용인력의 사망·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-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 시에는 "고객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7 조 (업무 위탁)

-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,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. 다만,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부,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(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.), 운용업무와 관련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, 장내파생상품,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회사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한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 게 안내하여야 합니다. 고객과의 계약체결 후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위탁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우편,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.
- ④ 회사는 수탁회사의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본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자산 평가 업무수행과 투자권 유업무를 수탁할 수 있으며,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수탁한 회사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.

제 8 조 (계약의 유효기간)

- ① 계약의 유효기간은 [별지1]의 계약기간으로 한다.
- ②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,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"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"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. 단,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제 9 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

- ① 고객은 서면 및 유선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상의



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이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고객이 계약등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2.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
- 3. 고객이 4회(계약한 연도에는 3회)이상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

제 10 조 (계약, 만료, 해지시의 재산형태)

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 또는 해지하는 시점에서의 재산 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한다. 단, 유가증권은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한다.

제 11 조 (투자일임자산 및 투자실적의 평가)

- 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는 계약 체결시는 계약일 전일, 계약 만료시는 만료일, 계약해지시는 해지일 전일을 기준으로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238조(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) 및 동법 시행령 260조(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)에 의한 자산 종류별 평가방법으로 한다. 단,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다.
- ②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자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 로 한다.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른다
- ③ 주식에 있어 배당,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,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가격,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.

제 12 조 (투자일임수수료)

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[별지1]에서 정한 투자일임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.

- ① 투자일임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.
 - 1. 기본수수료 :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합의한 계약조건상의 기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선취로 받는 수수료이다.
 - 2. 성과수수료 : 투자일임서비스의 성과에 연동되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간정산 및 중도해지시 실현된 투자실적을 근거로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산정한다.
- ② 투자일임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다.
 - 1. 투자일임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되며,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 - 2. 회사는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 - 3. 성과수수료는 고객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- ③ 고객은 제1항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, 지급 시기는 [별지1]의 수수료 지급시기에 따른다. 또한 수수료의 지급은 [별지1]에 명기된 회사의 지정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. 회사는 기본수수료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운용을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

④ 계약의 중도해지시 수수료는 [별지1]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회사는 고객이 중도해지 시 [별지1]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)

-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, 투자성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.
- ② 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, 투자성향 등의 변경여부를 서면, 유선, 전자우편 등으로 연 1회이상 확인하고,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(서면, 전자우편 등)하여야 한다.
-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은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.
- ④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,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,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고객의 운용지시)

고객은 리스크 관리 목적이나 전략상의 변화 등을 이유로 특정증권 등의 취득·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, 이를 회사에 대면·서면·E-mail 등의 방법으로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회사는 이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·관리 한다

제 15 조 (투자일임보고서 교부)

- ①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분기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야 한다. 단,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 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투자일임계약의 개요 및 손익 현황
 - 2.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, 매매가격,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
 - 3. 투자일임재산의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, 취득가액, 시가 및 평가손익
 - 4. 투자일임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그 시기 및 금액
 - 5. 투자일임자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
 - 6.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
 - 7.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(시기, 실적, 잔액)
 - 8. 그 밖의 관계법령상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6 조 (비밀유지의무)

-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.
-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사항,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



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.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.

③ 회사는 고객이 개설한 투자일임재산 계좌의 운용관련 자료를 해당 증권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언제든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.

제 17 조 (통지 의무)

-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영업점 및 계좌번호, 주소와 연락처,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[별지1]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또는 전화, 전자우편 등으로 한다. 다만,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.
-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운용결과의 귀속)

회사가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.

제 19 조 (회사의 금지행위)

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 조 제2 항」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고객으로부터 금전 또는 증권의 보관, 예탁을 받는 행위
- 2. 고객에게 금전 또는 증권,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 또는 증권 의 대여를 중개,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
- 3.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
- 4.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
- 5.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 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- 6.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자산으로 매수하는 행위. 다만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7.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자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증권의 보관, 예탁을 받는 행위
- 8.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자산,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 하는 행위
- 9.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- 10.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


- 11. 투자일임자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
- 12. 자본시장법, 동법 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

제 20 조 (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)

-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.
 - 1.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,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
 - 2.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
 - 3.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. 단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 - 4. 자본시장법, 동법 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
-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21 조 (이해상충방지 체계)

- ①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.
- ② 회사가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, 거래실적 및 잔액을 투자일임보고서 제출 시 고객에게 통보한다.
- ③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내부통제기준, 이해상충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여 규정을 준수하며, 주기적으로 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.

제 22 조 (청약의 철회)

- ① 고객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(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)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. 단,고객이 [별지2]에서 투자일임자산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- ② 고객은 계약의 철회 표시를 위하여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사에 발송하여야 하며, 그 발송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.
- ③ 회사는 고객의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[별첨]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

제 23 조 (위법계약이 해지)

고객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24 조 (약관의 변경 등)

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



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

-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25 조 (과세신고)

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과세관련 신고(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)는 고객이 해당 세무당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(면책)

회사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- ① 천재지변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,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(고객의 운용지시 포함)로 인한 손실
- ② 서류 및 인감(또는 서명감)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및 도용,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
제 27 조 (관계법규 등의 준용)

-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.
-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'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'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.

제 28 조 (분쟁조정)

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 29 조 (관할법원)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



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.

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고객 :

성 명(상호): (서명/인)

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:

주 소 :

회사 :

상 호 : 씨스퀘어자산운용

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송센터빌딩 8층 (07327)

사업자등록번호:119-88-00388 대 표 이 사:최 종 혁 (인)



[별지 1]

투자일임 세부 계약서

(계약의 내용)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계약기간	년	월	일 부터		년	월	일	까지
계약금액	금				_원정 (₩)
	혼합보수형	기본수수료(선취) : 계약금액의 <u>연</u> % 성과수수료(후취) :						
		중도해지수수료 :						
수수료		① 중도해지시 선취한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함 ② 계약금액 추가시 기본수수료 : 추가계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 x 잔존일수 / 365(윤년인 경우 366) ③ 성과수수료 : 고객과 별도로 합의에 따라 정함 ④ 중도해지수수료 : 고객과 별도로 합의에 따라 정함						
거래증권회사	거래증권사 : 계좌 번호 :		<u>2</u>	증권		Τ)	점)	
지점 및 계좌번호	담당자(관리자)	성명:			연락처 :			
	주 소:							
고객에 대한 통지	연락처 :							
장소	E-mail:							
	※ 투자일임보고서 교부방법 : □ 우편 □ 이메일							
투자일임담당자	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, 성과수수료는 계약만기일·중도해지일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.							
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								
ᆽ ᆸᆷ게ᅬ	수수료 입금계좌 : KB국민은행 867737-04-007815 씨스퀘어자산운용㈜							
그 밖의 사항								



[별지 2]

일임자산 즉시 운용에 대한 동의서

1.	본 계약은	은 「자본시	장과 금융	용투자업에	관한	법률	시행령」에	따른	고난.	도투자일	임계약으로
	고객은「	금융소비자	보호에	관한 법률	」에 따	른 청	약철회권을	행사할	· 수 :	있습니다.	

- 2. 본인은 투자일임자산을 (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 / 비동의)합니다.
- 3. 본 동의서에 동의하실 경우 고객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
년 월 일

고객:

성 명: (서명/인)



[별첨]

- 1. 제22조3항의 "[별첨]에서 정하는"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.
 - 반환금액에 연 6%의 이자율을 일할 계산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

